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김상훈 · 윤한홍 · 고동진
김형동 · 이종욱 · 박충권
강대식 · 김대식 · 이만희
김재섭 · 조지연 · 조승환
이현승 · 진종오 · 김기현
박수영 · 이달희 · 최보운
최수진 · 권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법률 17646호)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과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사이버안보 공격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토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가정보원장이 간사

위원이 됨(안 제7조).

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함(안 제10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1조).

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함(안 제13조).

아.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사이버공격·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위협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점검 등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만기별로 보고함(안 제19조).

카.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 해병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사이버피해 조사 및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함
(안 제21조).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간”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정보 처리 영역을 말한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이버공간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또는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안보”란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하여 국가기반시설의 핵심기능이 훼손·정지·무력화되거나 국가기밀 등 중요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사이버공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기관”이란 사이버안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시·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나.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사.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자. 그 밖에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소관사무 영역 보호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원기관”이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

라.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사이버안보 전문업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공간을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등

제5조(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2.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체계
4. 사이버안보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5.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6.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7. 그 밖에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반영하기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

2.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3.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대책·계획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②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절차 및 세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①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전략·정책·법령 및 예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보 위해자 및 배후 국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이버안보 활동

- 제8조(국가사이버안보센터) ①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조치로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대응, 사이버공격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민관합동 통합 대응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통합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기관, 지원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보안관제체계의 구축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각 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책임기관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통합보안관제체계 및 보안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의 공유)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거나 처리하는 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책임기관의 소관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해

당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방정보침해에 관한 정보
 3.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5.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수행하는 침해대응에 관한 정보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7. 사이버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책임기관의 제1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책임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 지원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공격·위협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방·대응활동) ① 책임기관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사무 영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점검·훈련 실시
2. 안전한 정보통신기기의 도입 및 활용
3.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정보공유, 사고신고 등 체계의 구축·운영
4. 전문인력 확보 및 직무교육 실시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이버보안 점검·훈련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 훈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예방·대응활동의 방법·절차 및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이버피해 조사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등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책임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피해의 복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조사 및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이버위기 경보의 발령) ①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사이버공격·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이하 “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민간 부문별 경보 또는 국가 전체의 통합경보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단계별로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보 발령의 기준·절차 및 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이버위기대책본부) ① 정부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 신속한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민간에 대한 부문별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 지원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이버안보 전문업체의 지정·관리) ① 정부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을 사이버안보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사이버안보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략·정책수립의 지원
2. 사이버안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사이버안보에 관한 교육훈련 및 이에 필요한 훈련센터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사이버안보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업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전문업체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①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점검 등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항목·절차·시기 등을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⑥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⑦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실태 평가의 절차와 방법,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국제협력)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사이버안보를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 2. 사이버안보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공동대응
- 3. 사이버안보 전담인력의 상호간 파견교육

제19조(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①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이버피해 조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3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책임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이버피해 조사
2. 제17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②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
기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